5. 물류창고 소방시설 기준의 소방관계법령상 적용가능 분석

5.1. 소방관계법령 체계 분석

소방법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58년 국내 소방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소방법 중 소방시설과 관련된 주요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 점검, 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확인사항·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 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감리, 준공 ·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감리·설계·공사)업에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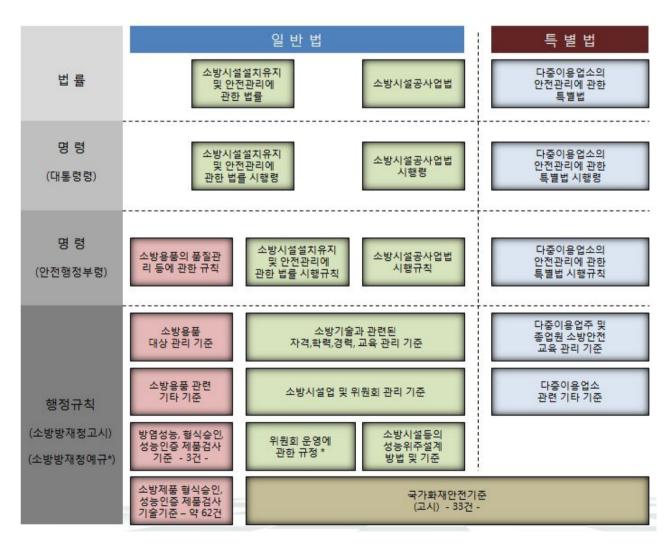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소화기 등 소방용품의 품질관리(형식승인,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있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방염, 완비증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5) 화재안전기준(고시)

소화기구,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용품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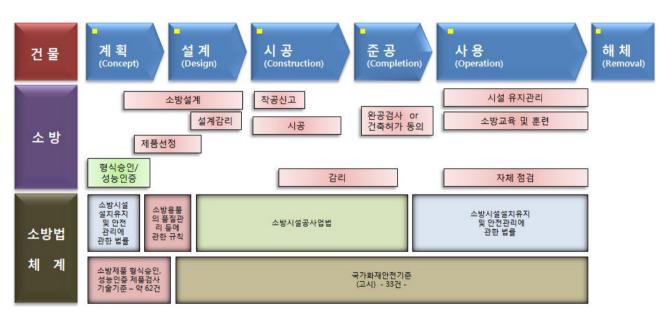
[그림 5-1] 소방시설관련법 체계

- 소방시설 법령체계 분석

소방법 중 소방 시설과 관련된 법은 크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공사업법, 그리고 화재안전기준이 가장 큰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일반법으로서 국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과 대통령 령인 시행령, 안전행정부령인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법령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국가 화재안전기준 등과 같은 소방방재청의 고시로서 제시되고 있다.

현재 소방시설과 관련된 분야는 ①소방용품 및 제품 등에 대한 부분, ②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한 부분, ③ 소방시설의 사용 단계에서의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는 건물의 생애주기와 관련하여 분석해볼 수도 있다. 건물 생애주기는 계획-> 설계-> 시공-> 준공-> 사용-> 해체 등의 순서로 구분한다.



[그림 5-2] 건물 생애주기 (Life cycle)와 소방법 체계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건물의 계획이전 사실상 소방용품에 관한 사항은 결정되어 진다. 이러한 소방용품의 사용은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고려되어 지게 된다.

소방시설의 설계, 착공신고, 시공, 시공감리, 그리고 완공검사 및 건축허가 동의 등의 절차에서 건물은 계획의 결과를 구체화하고, 실체화하여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 이는 국가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하드웨어적 화 재안전의 수준이 설정된 데로 구현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건물의 설정된 수준을 건물의 사용기간 동안, 즉 해체이전까지 유지하며,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설정하는 단계가 있다.

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관련 법규의 구성

현재 소방시설과 관련된 법에서, 소방용품 및 제품등에 관련된 사항은 법적 근거의출발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부터 시작된다. 이 법에서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와 형식승인, 성능인증, 우수품질인증, 용품수집검사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 하위에의 시행령에는 해당 법이 없으며, 시행규칙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소화기 등 소방용품의 품질관리(형식승인,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한 고시로 가게 되면, 소방용품관련 기준들이 다수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제품 형식승인, 성능인증, 제품검사 등에 관한 기술기준만 대략 62건 이상이 행정규칙으로 수록되어 있다. 소방산업에서는 제조업이 해당된다.

② 건물의 설계에서 사용단계 이전까지 관련 법규의 구성

이 부분은 건축주에 의해 계획된 건물을 구체화하고 실체화하는 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는데,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른 화재안전의 수준을 부여하고 확보하는 단 계이다. 이 부분은 [소방시설공사업]에서 다루게 된다. 이 법은 하위에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 구현될 각 시스템에 대한 세부기준을 [국가화재안전기 준]에서 수록하고 있다. 이 부분은 소방산업 중에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업이 해당된다.

③ 건물의 사용단계, 해체 이전까지 관련된 법규의 구성

이 부분은 소방시설이 설치된 이후 그 화재안전수준을 해체이전까지 유지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해당한다. 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다.

④ 특별한 대상에 대해 높은 수준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이러한 법에 대해 더욱 높은 수준의 화재안전 확보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특별대상은 특별법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는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로 구현되고 있다. 이법은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석적으로 모든 일반법에 우선된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소공법] 소방 시설업 +시설업 등록/변경/운영 등	[소공법-령] 소방 시설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공법·규칙] 소방 시설업 +등록 신청,등록증, 변경, 신고, + 행정처분 [별표 1]
[소공법] 소방시설공사-설계 /설계업자 의무 + 법,령,화재안전기준/특정소방대상물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성능설계	성능위주설계 + 대상 특성 소방대상물의 범위 + 자격 [별표 1의 2] [소공법-령]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 [별표 2]	+ 과징금 [별표 2] [소공법-규칙] 소방시설공사 등 + 착공신고, 완공검사, 하자보수 이행증서
[소공법] 소방시설공사-시공 /시공업자 의무 + 시공,작공,완공검사, 공사하자보수 보증	[소공법-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소공법-규칙]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 세부배치기준, 배치통보, 위반보고, 결과통보
[소공법] 소방시설공사-감리 /공사감리업자 의무 + 업무, 지정, 배치, 위반사항조치,결과통보	[소공법-령] 완공검사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물 범위 [소공법-령] 하자보수 관련 + 하자보수 대상, 보증기간, 이행보증	[소공법-규칙]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통지 등 [소공법-규칙] 소방기술용역(설계,감리) 대가기준 산정방식
[소공법] 소방시설공사-도급 + 하도급제한,계약해지,공사제한,용역대가 +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소공법-령]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장소	[소공법-규칙]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 신청/평가 [별표 4] [소공법-규칙] 소방기술관리 [별표 4의 2]
[소공법] 소방 기술자 - 기술자 의무 + 경력인정, 실무교육	소방공사감리 관련 + 종류, 방법, 대상/대상 범위/배치기준 [소공법-령]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 인정범위,취소기준, 실무교육, 감독 [소공법-규칙]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지정/관리
[소공법]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및 소방시설업자협회 + 중앙/지방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시설업자협회 설립	[소공법-령] 소방시설공사 시공 하도급 가능 경우 [소공법-령] 소방기술 심의 위원회	[소공법-규칙] 보칙 - 수수료 기준 [별표 7]
[소공법] 보칙 +시설관계자 감독 +소방안전협회,협회, 법인 감독 + 위탁->협회, 법인, 단제	+ 심의사항, 구성,위촉, 직무,활동, 수당,운영 [소공법-령] 소방시설업자협회 설립인가 절차 등 + 감독, 업무 위탁	
[소공법] 벌칙 / 과태료	[소공법-령] 과태료 부과기준 + [별표 5]	

[그림 5-3]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 분석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조치명령 절차, 손실청구 소방 시설 + 범위 [별표 1] 소방 특별 조사 + 조사권한 +전문가 ,절차, 조치 특정 소방 대상물 + 범위 [별표 2] 건축허가 동의 + 완공검사증명서로 갈음 건축하가 동의요구, 동의요구서, 관리 소방용품 + 범위 [별표 3] 주택 설치 소방시설+ 소화기구, 단독경보감지기 터널 위험등급 (도로) 소방특별조사 특정소방대상물 설치 시설 유지관리+관계인의무 + 항목, 대상선정위원회 구성, 위원관리,방법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 내진설계 기준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 범위 피난방화구획 방화시설 유지관리 +관계인 의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른 소방시설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기준 [별표 5] 방염처리업 등록신청, 관리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강화기준의 적용 소방시설 내진설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염 + 대상, 성능검사,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노유자시설 특정소방 근무자 거주자 소방훈련과 교육 방염처리업 +등록, 관리 유사 소방시설 설치면제기준 +[별표 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관계인 의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특정소방 관계인 등) 특정소방대상물 증축, 용도변경 시설적용특례 + 관계인, 안전관리자 업무+시설 시정 ,보고 의무 소방시설 자체점검 + 기술자격자 범위, 대상, 점검결과보고서, 수수료 소방시설 설치면제 특정소방대상물범위 +[별표 7] 공동 소방안전관리 +고층건축물, 지하가, 기타 특정소방대상물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설치 특정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 거주자 소방훈련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성능시험기준)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등 + 평가위원회, 평가 등 방염업 종류, 영업범위, 등록기준 +[별표 8]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관리 점검능력평가, 절차 등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별표 2] 기준 판단 (특급/1급./2급 대상물) 소방시설 자체 점검 + 자체점검, 관리업자, 기술자격자 정기점검 + 결과보고 + 관리업 기술자격자 점검수수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특급/1급/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특급, 1급, 2급, 시험관리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소방시설 관리사+자격,부정행위,관리 소방안전대상물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 ->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관리, 과징금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형식승인. 성능인증 + 우수품질 인증, 용품 수집검사 근무자 거주자 소방훈련 교육 실시 대상 특정물 + 한국소방안전협희가 갖추어야할 시설기준 소방시설관리사 + 서식, 수수료, 교육비, 행정처분 [별표 8] + 시험자격,방법,과목,위원, 시험관리, 합격자결정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취소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지정 위탁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 [별표 9] + 감독 수수료 등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범칙/과태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림 5-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분석

보친

5.2. 물류창고 소방시설의 소방공사 및 유지관리 상 고려 사항

물류창고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이미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현행 소방법의 체계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시설 설치의 근거와 설계에 대한 조건이 나오고, 세부적인 설계사항은 국가화재 안전기준을 거치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시설을 설치하 는 공사부분에 대한 사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다루고 있다.

소방시설이 설치된 이후에는 다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적용 받게 된다.

4장에서는 국가화재안전기준과 소방제품 형식승인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으며, 본 장에서는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공사, 감리, 완공검사,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에 필요한 내용을 정립하여 보았다.

(1) 냉동물류창고의 소방시설 설치의 근거

현재 창고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있으며, 이에 의해 필요한 소방시설의 적용을 받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 16.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다)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나. 하역장
 -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2) 소방시설 설계

소방시설의 설계는 소방시설 설계업에 등록한 자가 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각 시스템의 설계에서 특별히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의 제도 운용에 의해 설계업자가 설계를 수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소방시설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변경) 신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한다. 현재의 소방시설 착공신 고서에는 설계 도서를 포함하도록 되어있는데, 창고의 냉동부분에 대한 설계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여, 면밀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수 있다.

(4) 시공 감리 및 완공검사

현장에서의 시공 및 감리에 대한 사항은 현행의 제도 운영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판단된다. 다만, 공사감리보고서에서 냉동창고 부분에 대한 것을 별 도로 제출하도록 하여, 면밀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수 있 다.

완공검사에서는 필히 냉동창고가 운용되는 최저온도 상태에서 각 소방시설들이 동작되는 지 여부를 시험하고, 문제발생 시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온상태에서 건식스프링클러 설비의 동작시험을 수행하여 건식밸브 동작 후 60초 이내에 헤드에서 살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해보아야 할 것이다.

(5) 유지관리사항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수행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평 시 냉동지역 내부의 소방시설들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작업수행중 문 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건식스프링클러의 결빙패관현상으로 인한 얼음의 점검 및 제거 작업을 위한 배관을 분해하고, 얼음형성 유무를 확인 후 제거하도록 한다. 점검의 주기는 운용 초기 확인된 얼음형성 정도를 보고 판단해야한다.

비화재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배관 내 물이 인입되었을 경우, 배관을 분해하고, 이를 상온지역으로 옮겨 얼음을 녹여 제거한 후 재설치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 생할 경우 관계인과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그 제거 조치 유무를 공식화 하 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5.3. 착공신고, 시설공사, 감리, 완공검사, 유지관리 등 제도 개선

(1) 착공신고 및 시설공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과 시공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의 공사에 대한 신고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에서 그 신설과 변경등의 중 요사항을 소방서에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류창고, 특히 랙크식 창고의 주요 보관품의 변화, 용도의 변화, 적재 랙크 형태의 변화와 같은 사항과 냉장냉동창고의 용도 변화 등과 같은 사항들은 소방안전관리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경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변화로 인한 소방시설의 추가 또는 제거 등의 문제를 관리하고, 집중적 관리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를 별도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 3. <생략>

4. 랙크식 물류창고와 동결우려가 있는 창고 내부의 구조 또는 재료의 변경, 주요 보관물품(가연물)의 변경, 용도의 변경 등은 소방시설의 신설, 증설, 보수 등과 관계없이 별도로 신고한다. <추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

- ① ~ ⑤ <생략>
- ⑥ 랙크식 물류창고와 동결우려가 있는 창고의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신고한다.
- 1. 변경사항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에 참여하는 소방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2. 주요 변경사항 및 관련 소방시설 현황 검토 서류
- 3. 변경사항의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 <추가>

(2) 감리 및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감리라 한다. 감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검토
-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 4)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서 상주 공사감리에 랙크식 창고와 동결우려가 있는 창고를 포함하도록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

종류: 상주공사감리

대상 : 3. 랙크식 창고와 동결우려가 있는 창고의 소방시설 공사 <신설>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 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서식 17]은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 양식에는 소방시설의 종류 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물류창고의 경우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서식 29]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통보)서의 양식도 마찬가지로 소방시설의 종류 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물류창고의 경우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3) 유지관리 개선

유지관리의 개선부분에서는 먼저 소방시설법의 제10조에 물류창고에 대한 방화구획 및 시설이 회손된 경우 지체없이 소방서에 신고하고 이후 경과보고를 하는 방안을 포 함할 필요가 있다.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② <생략>

③ 랙크식창고 또는 동결우려가 있는 창고의 방화구획, 방화시설이 폐쇄되거나 훼손되는 경우이를 지체없이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후 조치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신설>

또한 랙크식 창고나 동결우려가 있는 창고의 경우 화재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생략>

-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가.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다. 랙크식 창고 또는 냉장 냉동창고 <신설>